

제739차 기술용역타당성 심사결과

- 건 명 : 「대방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」
- 심 사 일 : 2013. 7. 29.
- 사업개요
 - 용역비 : 272백만원
 - 용역기간 : 착수일로부터 6개월
 - 시설규모 : 대방천복개 : B=16 ~ 25m, L=2,660m
- 심사결과 : 적정(조건부)

심사항목	심사내용
1. 용역의 필요성 [자체시행 47개 공종대상여부] □ 대상 ■ 미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본 용역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거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임
2.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- 개략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- 소요 기술인력 산정의 적정성	알림 : 주요 공종이 자체시행대상 용역인 경우 원칙적으로 발주부서 자체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용역비 조정 : 272,811천원 → 261,360천원 (감 11,451천원, 용역비 대비 -4.2%) - 직접인건비 조정(전체/외업) : 428/219(인)→ 430/220(인) ※ 조정비 적용오류 수정 및 단순반복 점검 추가적용 · 경과년수(1988년) : 1.0 → 1.05 (15년초과 25년이내) · 주기적 단순반복 : 0.95 추가적용 - 현장체제비 : 20,000원 적용 - 납품도서 인쇄비 : 2,191천원 → 267천원 - 차량운행비(적용제외) : 43대 → 0대 - 물기상승률(2014년) 조정 : 5% → 2.2% - 점검용 강관작업대 물량조정 : 156㎡ → 129㎡ - 점검용 백호, 점검용 크레인 적용제외
3. 과업의 내용, 범위의 적정성 등 기타 검토의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용역수행과정에서 용역비 집행 및 정산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
4. 리스크 관리항목 적정성 - 용역면·중요인의 관리책 적정성 - 용역비 증가요인의 관리책 적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용역발주 시 명확한 과업범위를 제시하여 용역수행 중 과업범위 변경 등으로 인한 용역비 증가를 최소화 할 것